

2022년 8월 충남대학교병원 보조금계약직(사회복지사) 공개채용 공고

충남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임상교육, 진료, 연구, 공공의료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료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충남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에 근거하여 모집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 및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의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직종	임용 예정 직급	분야	모집 인원	응시자격 및 근로계약기간	근무지
보조금 계약직	-	사회복지사	1	[우대] 정신건강전문요원 세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하는 자 ①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②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2급 이상 ③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2급 이상 계약기간 : 임용일 ~ 2022.12.31. (추후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9:00 ~ 18:00 통상근무	정신건강의학과

※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분야 필수 면허증(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위 응시요건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적부를 판단함

나. 공통 응시자격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에 한함

다.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공무원의 경우 정년(만60세) 초과자는 임용 불가)

라. 학력 제한 없음 (단, 필요한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제한 가능하며 분야별 응시자격에 따름)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 우대

2. 전형 단계 및 일정

가. 전형 단계

구분	평가내용 및 방법	합격자선발
자격확인	· 필수자격요건 및 응시원서 작성 여부 확인	요건 충족자 전원
면접전형	· 조직이해도 및 직업윤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 등 평가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준하여 실시 (잠복 결핵 등 추가 검사)	적·부 판단
비고	· 필수응시자격이 확인된 원서접수 완료자는 모두 면접시험 대상으로 선정	

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8.3.(수) ~ 상시	· 병원 채용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추후 공지	· 개별 문자통보
관리자면접	추후 공지(별도 공지)	· 시험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내 회의실 · 분야별 장소 및 일정 추후 공지 ※ 코로나19 상황 등 병원사정에 따라 주말(토,일)에 시행할 수도 있음
임용예정일	추후 공지	· 병원 사정에 따라 임용일은 조정될 수 있음

※ 본 일정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면접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일정 변경 시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연락

※ 상시모집공고는 인력충원이 완료되거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 없이 공고 종료될 수 있음.

※ 합격자 확인은 충남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적으로 통보된 문자로 확인

※ 면접전형 시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필수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8.3.(수) ~ 상시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충남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 (<https://www.cnuh.co.kr/recruit>)을 통한 온라인 접수
(로그인 후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이력서 및 직무능력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 마감시간이 임박해서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아래의 [4. 응시원서 작성 안내]를 숙지하고,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필수제출서류	① 필수자격 증빙서류 사본 1부. ※ 자격(면허)번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기타등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미등록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미등록시 가점 미부여) ◦ 기타 면허(자격)증 1부. ※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수료증 및 봉사활동확인서 등은 제외
제출시기	입사지원 원서접수 시 등록 (원서접수 마감일 17시 까지)
제출방법	충남대학교병원 채용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등록(업로드) ※ pdf 파일로 등록 ※ 파일명 : 채용분야_성명_서류종류 (ex 계약직 임상병리사_홍길동_필수면허증 사본)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함

라. 접수 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자격, 경력** 등을 기입한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 ① 응시원서 작성은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함.
- ② 원서접수 완료 후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최종제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람
- ③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등록**하며, 사전에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
- ④ 여러 서류를 한 항목에 등록할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 또는 편집**하여 업로드
- ⑤ 서류에 개인정보(생년월일, 학교명 등)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부분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린 후 업로드** (※ 성명은 가리지 않음)
- ⑥ **가점증명서(장애인등록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인터넷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목에 **서류를 등록**해야 하며, 만약 기타서류항목 등에 등록할 경우 가점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관할 보건지청에서 발급하며, 제출처란에 “충남대학교병원”을 반드시 명시(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유무는 국가보훈처로 문의)
- ⑦ 접수기한 내에 응시원서를 ‘최종제출’ 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불합격 처리

마. 수험표 출력 :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후 수험표 출력 (채용홈페이지-마이페이지)

4. 응시원서 작성 안내

가. 접수마감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최종제출 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블라인드채용 관련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 현주소 기재 시 출신학교가 드러나는 주소(00대학교 기숙사 등) 사용금지
- E-mail 기재 시 출신학교가 드러나는 메일 주소 사용금지
- 증빙서류 등록 시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린 후 업로드 또는 제출 (성명은 가리지 않음)
- 기타 원서접수 시 등록한 인적사항은 면접전형 시 임의 블라인드 처리됨

다. 경력사항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한 이력을 의미하며, 해당 경력의 근무기간, 부서, 담당업무 등을 상세히 기재

라.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외국어, 자격·면허, 경력사항 등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원서접수 시 등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전형에 반영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미기재, 미등록),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지원서 작성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사. 자기소개서 문항 중 무의미한 반복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이 없는 경우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아. 가산점 안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채용시험을 응시할 경우 가점을 적용함. (단,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퍼센트를 적용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5. 최종합격자 임용 관련 안내

- 가. 최종합격 시에는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만, 병원 및 합격자 사정에 따라 임용일은 일정기간 내 협의조정 가능
- 나. 최종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임용하며, 개인마다 임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
- 다. 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도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치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라. 최종합격(신규임용)자는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
- 마.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필수자격 확인 및 기타 인사관리 상 필요한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6. 기타 사항

-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내부규정에 의함.
- 나.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전자우편(주소 : cnuhinsa@cnuh.co.kr) 또는 팩스(042-280-6229) 등으로 제출할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수신자 부담으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서류와 응시자가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온라인 제출서류는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 라. 채용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전형단계 및 점수에 관계없이 전형에서 제외하며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직권면직하고,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마. 불합격자 중 해당 채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정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 : cnuhinsa@cnuh.co.kr)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할 수 있음.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홈페이지-[채용정보센터] (<http://www.cnuh.co.kr/recruit/index.jsp>)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복 및 유사질문이 많으므로 채용정보센터의 [채용안내] 및 본 채용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042-280-6226)로 문의 또는 채용홈페이지 Q&A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람.

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질환자 또는 육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